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업무 관련 FAQ

1.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제도가 무어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그 내용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리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 신고 사항 : 사업자 정보(회사명, 대표자, 주소), 파생모델, 부품 변경 등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은 국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면 되고,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2.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전기용품 대상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을 따르며 동법 운용요령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대상 세부 품목명 확인 가능합니다.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는 2017년 1월 28일 이전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이행한 전기용품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전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은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변경신고를 진행 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 후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은 통관 또는 출고 전에 관리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수입제품의 통관 시에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가 필요한가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하며, 통관 시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별지 제17호서식)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별지 제18호서식)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통관된 후에도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동법 제51조 과태료 규정에 의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별지 제17호서식)가 필요합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6.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시 제품명을 법정용어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제품이 법정 제품명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과 유사한 기기로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인 경우라면 '그 밖에 가목부터 □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의 형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 1~3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품목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

○○ : 유사한 기기의 법적 세부 품목명

ex) 신고하고자 하는 기기가 '비디오카메라' 와 유사한 기기로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이라면 제품명작성은 [그 밖에 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비디오카메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명 확인 방법 :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 > 안전정책 > 제품안전 대상품목 > 전기용품 > 공급자적합성확인

7.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변경)업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3조 제1항 12호에 따라 신고와 변경 신고 각각 모델당 1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부가세 포함)

8. 수수료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입금 계좌 : 우리은행 1005-703-566500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접수번호당 11,000원(부가세 포함)

* 세금계산서 청구, 카드결제 등의 다른 결제방식을 희망하시는 경우 supply@kips.kr로 요청 메일 또는 1670-4920 (내선5. 공급자적합성신고 문의)로 연락 주시길 안내드립니다.

9. 수수료는 미리입금해도 되나요?

- 수수료 입금은 처리상태가 '입금확인중'일 때 요청드립니다.
- * 접수된 신고내역은 순서대로 검토되며, 검토 후 상태가 '입금확인중' 으로 변경됩니다.

10.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변경)업무의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변경) 업무의 처리 기간은 각각 7일입니다.(주말, 공휴일 제외)

11. 과거 별지서류를 보유하고 있는데 변경신청시 별지를 수정해서 제출 가능한가요?

- 과거 변경신청시 별지 양식 서류가 필요서류였으나 현재는 별지양식은 제출 서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별지는 제출 생략해 주시고 별지 수정 서류는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12. 적합성 신고하고 나서 수정을 하고 싶는데 상태 값이 처리중으로 떠있고 수정이 안됩니다.

- 처리중은 서류검토 대기 상태로 직접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중간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리원으로 수정 가능 상태로의 변경을 요청 시 상태 변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3. 적용안전기준은 어떻게 확인하고 작성하면 되나요?

- 적용안전기준은 제품 시험성적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성적서를 확인하시고 작성 바랍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 25]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제63조 관련) 참고

14. 위임서류가 무엇인가요?

- 위임서류는 대행업체가 신청인일 경우에만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일반적인 신고의 경우는 생략하시고 공급자적합성확인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5. 파생모델명 적는 칸이 모자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 신고내역 하단 부 별지추가를 체크하시면 별지 작성칸이 활성화됩니다. 해당 부분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별지 추가 사유 : 파생모델 기입)

16. 가입을 했는데 승인이 필요하다고 뜹니다. 바로 적합성신고를 할 수 없나요?

- 사이트는 관리자의 회원가입 승인 이후 이용 가능하며, 승인까지는 근무일 기준 최대 1일 소요되실 수 있습니다.

* 빠른 승인이 필요한 경우 supply@kips.kr로 요청 메일 또는 1670-4920 (내선5. 공급자적합성신고 문의)로 연락 주시길 안내드립니다.

17. 기존의 회원인데 사이트가 바뀌고 나서 로그인 안 됩니다.

- 공급자적합성온라인신고 사이트가 리뉴얼(18년 07월)되었습니다. 때문에 기존 회원 가입한 내역이 있어도 새로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가입절차 중 기존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가입 진행해 주시면 이용 가능합니다.

18. 회원가입 정보를 전부 입력 했는데도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회원가입 중간 위치에 있는 [기존회원전환버튼]을 누르는 것을 생략한 것은 아닌지 확인바랍니다.

19.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기본모델 정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 발급된 자료는 변경된 내용 확인이 가능한 별지 제19호서식인 변경신고 증명서입니다. 기존 발급 받으신 별지 제18호서식 뒤에 부착하여 사용하시길 안내드립니다.

20.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의 발급번호를 제품에 표기해야 하나요?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표시사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및 안전기준에 따라 표기하며, 관리원에서 발급하는 공급자적합성신고 발급번호의 경우 표시의무는 없습니다.